

제5차 산업경제위원회
2008.12.16 (화) 10:30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2월 08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2월 09일

3. 제안 이유

-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양질의 산림문화·휴양공간 제공과 휴양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 중 「산림법」을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1조, 제2조, 제10조)
- 나. 시설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근거 정비 및 사용료 현실화(안 제3조의 별표)
- 다.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(안 제2조, 제5조 등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도민에게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휴양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려는 것으로,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시설의 신규설치에 따른 규모 대비 사용요금의 적정성 그리고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